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발전방안

이 상 철*

<목 차>

- I. 서 론
- II. 경찰·경호무도의 유래와 유형별 특성
- III.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
- IV.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실태
- V.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발전방안
- V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과학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범죄수법은 지능화, 전문화, 광역화 되어가고 범죄양상 또한 흉악, 잔인화 되어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체제는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근대화 와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관주도형 산업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50년대의 전통적 사회에서 60년대의 과도기 사회(transitional society)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의 산업사회의 출현을 경험하면서 80년대 고도산업사회와 90년대 국제화·개방화·미래화의 문민정부를 거쳐 21세기 사이버시대의 국민정부를 맞이 하는 급격한 경제사회(산업화)의 변화와 사회체제의 급속한 구조적 분화에 의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향락적 풍조와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이학박사.

이 증가하여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¹⁾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범죄수법은 지능화·전문화·광역화되어 가고 범죄양상 또한 흉악·잔인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경찰 경호직 종사자는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층의 다양한 경호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 특히 경호는 경호대상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위태상황을 최근접에서 처리하는 최후의 방벽이며, 위태기도는 그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이 위해 기도자에 의해 결정되므로³⁾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경호직 종사자의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치안관련설비, 장비개선 등의 물질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관련종사자의 효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교육훈련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정립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찰·경호무도의 기술적인 통합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무도교육의 지원체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경찰 경호직 종사자들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의 다양한 위해 요소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일반무도와는 다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찰·경호무도가 국민들의 보호와 치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경찰·경호직 종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통합적으로 개선되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응용능력이 발휘되어야만 경찰·경호무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무도, 체력, 사격 등의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행법의 체포, 작전 임무 수행을 위

-
- 1) 이상철, 근접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호무도의 접근방법, 경호경비학회 논문집 제2호, 1999, p.161.
 - 2) 이상철,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 용인대무도연구소 논문집, 1997. p.215.
 - 3) 염상국,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36.
 - 4) 이영석, 경호무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 기초 체력 단련과 자위 능력제고, 정신 수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호신술·체포술 등의 무도수련은 경찰 경호직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⁵⁾

처음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경호경찰직 종사자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동하는 치안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무과정 동안 계속되는 꾸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교육훈련의 목표는 관련종사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치안여건 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 기술습득 그리고 가치관과 경호경찰직 종사자의 윤리와 자질을 확립하는데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경호 경찰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도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도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의 도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경찰 경호직 종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무도교육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참고서적, 학술지, 연구논문 및 인터넷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분석을 하였고, 국내 민간경호·경비업체 및 사설경호교육기관에 직접 방문과 홍보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직 종사자의 무도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규와 경찰공무원 교육기관의 참고자료와 무도담당 교관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부서 간부와 일선 근무자와의 대담과 질의응답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찰·경호직 종사자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경찰·경호관련학 교과과정의 분석과 관련담당 교수와의 대담을 통하여 학계의 무도교육의 실태와 문제

5) 육군사관학교, 무도교본, 1996, p.216; 이상찬, 유도, 정미사, 1995, p.38;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교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1975, p.27; 경찰대학, 무도교본, 대한문화사, 1997, p.85.

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1) 본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 종사자와의 대담 및 분석이 이루어진 관계로 전체 경찰 및 경호직 종사자에게 적용 또는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2) 경찰·경호직 관련 종사자의 무도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은 사설경호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학계는 4년제 대학중심으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3)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지원체제와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의 내용이 현실적인 실태와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경찰·경호직 종사자의 무도교육발전방안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가미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법적, 제도적으로 타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II. 경찰·경호무도의 유래와 유형별 특성

1. 경찰·경호무도의 유래

경찰·경호무도는 경찰·경호직 종사자의 기본 직무능력이며 수양으로서 단순히 단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대한 자신과 강인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배양하는데 그 근본적인 뜻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봉사자로서의 능력이며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보호하며 정의를 위한 전진으로서 패기를 기르는 능력이기도 하다.⁶⁾

또한 경찰·경호무도의 진정한 목적이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완벽한 보호와 정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경찰대학 (1997). 무도교본. 대한문화사. p.56

경호무도의 유래는 국민의 치안임무를 수행하던 경찰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찰무도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무도교육은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과 더불어 같은 해 9월 13일 미군정 하에서 서울 세종로 소재 경찰관 관습소를 개설하고 2천여명의 경찰관을 공모, 신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 최초의 민주주의적 경찰교육의 시초라 볼 수 있겠다.

한국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 창설을 내디딘 같은 해 11월 8일 민주경찰의 상징인 “봉사와 질서”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경찰직무의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강건한 체력 단련과 엄정한 법규확립 및 명량한 품성배양”을 통해서 “대동단결과 협동정신”을 고취하고자 1947년 7월 31일 “대한경찰상무회”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무회 회원은 전국 경찰관으로 하고 약간의 회비를 징수하여 경찰상무회 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매년 합동경찰관 무도대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9년 6월 12일 경찰전문학교 술과 과목에 무도수련으로 유도·포박학(22시간, 4%)을 교육하였는데 이때의 포박학이 바로 경찰무도 교육으로 변화·발전하게 되었으며, 1952년 8월 6일 경찰관교양규정(내무부 훈령제42호)제정으로 술과 훈련에 포박술(체포술)이 포함된 후 체포술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대한경찰상무회” 주도로 전국적인 순회강습회를 갖게 되었다.

1954년 3월 3일 경찰전문학교 직제개정으로 체육학과 신설과 1962년 2월 각 시도에 경찰학교 설치와 동시에 상무관을 건립함으로써, 무도·체포술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공무원훈련법의 제정으로 경찰체포술도 일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이때의 경찰상무회 업무는 본래 치안국 경무과 상무계에서 관장하였으나, 1954년 3월 경찰전문학교에 이관되었다가 그 다음 해 4월 25일 치안국 직제를 일부 재정함으로써 재차 치안국 경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곧바로 교육과로 이관되어 현재 경찰청 교육과에 무도연구지도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7) 정진환 (1979). 한국경찰 교육제도 발달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또한, 1981년 경찰대학 개교와 더불어 상무학과를 두고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체포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흥포화, 조직화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무도사범들에게 집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기초체포술”을 위하여 실무교양자료를 발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함으로써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인 체포술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⁸⁾

그러나 최근 무도도장을 주축으로 한 사설경호업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각 무도 종목별 기본무도를 변형하여 경호무도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상황에 적용하기에는 기법상의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2. 경찰·경호무도의 유형별 특성

경찰·경호무도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업무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찰·경호무도의 유형을 유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각 무도의 유형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⁹⁾

1) 유 도

유도란 맨손으로 상대와 맞잡고 공격·방어하는 무술로서 서로 매치고, 누르고, 조르고, 꺾기도 하는 연습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련하는 격투기라고 할 수 있으나 깊은 의미에서 유도는 「柔能制剛」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상대의 힘에 순응하면서 그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법리를 기본으로 한다.¹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일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밀어오면 나는 이에 반항하지 않고 그 힘에 순응하면서 물러섬과 동시에 밀고 들어오는 힘을 이용하여 앞으로 끌어당기면 상대는 오히려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때 적당한

8) 경찰대학 무도교본, 전게서, p.38.

9) 이상철, 전계논문, p.16.

10) 이제황, 전게서, p.128.

기술을 걸면 상대는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나를 끌면 이에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면서 상대가 끄는 이상으로 밀어 부치면 상대는 균형을 잃고 몸이 뒤로 기울어질 때 적당한 기술을 구사하여 상대를 메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柔能制剛 弱能制剛(부드러움이 도리어 굳센 것을 제압할 수 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이란 것이다.

그러나 유도를 柔의 理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며 이는 유도 기술의 기본일지 언정 유도의 전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의 조르기나 누르기 공격에 몸을 좁혀 순응하면 더욱 강한 공격을 받게 되고 또한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기술을 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때는 먼저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대항하여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도는 기술을 갖추기 이전에 정신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하며 공격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정신과 신체의 힘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精力 善用」이야말로 유도의 근본정신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도는 심신의 힘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며, 부단한 수련과정을 통하여 무술로서, 체육활동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고루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완성의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도는 주로 맨손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술로서 유능제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즉, 적은 힘을 가지고 능히 큰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활용기술이며, 신체와 정신의 종합적인 훈련인 것이다.¹¹⁾

유도는 상대성 경기이고 공격과 방어의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진행되므로 기본 기술만으로 성공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기 다른 기술과 기술을 연결 또는 혼합하여 상대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정확한 동작에서 시작되는데, 발의 위치, 너비, 발끝의 방향, 무릎의 각도, 중심의 위치 등은 한 기본기술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완성하려면 중간 역할로서 굴신, 회전, 이동 등이 한 기술을

11) 육군사관학교, 무도교본, 1996, p.304.

완성시키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의 성공여부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허접의 순간적인 포착과 처음 움직이는 398시간과 행동의 속도 및 정확성이 동작의 요점이다. 또한 움직이는 상대에 대한 가동영역, 강약의 강도변화와 상대가 자신의 의도에 대한 예측 등은 상대를 제압하고 기술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요점이 된다.¹²⁾

이와 같이 유도도는 상대의 힘이나 동작에 반항하지 않고 그 힘을 내것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여 그 힘을 역이용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유도도의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유도의 기술은 메치기, 굳히기, 급소 찌르기로 분류되는데, 메치기는 메칠 때의 자세에 의해서 다시 선 기술과 누우면서 메치기 기술로 나뉘어 진다. 선기술은 메칠 때 주로 사용하는 신체의 부위에 의하여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로 세분되고, 누우면서 메치는 기술은 바로 누우면서 메치는 기술과 모로 누우면서 메치는 기술로 분류된다. 굳히기 기술은 누르기, 조르기, 꺾기의 세 종류로 나누어지고 누르기는 상대를 눕혀 상체를 위에서 제압하는 기술이며, 조르기는 상대의 목을 졸라 제압하는 기술이다. 꺾기는 상대의 주관절을 꺾는 기술이고 급소 찌르기는 상대의 급소를 손이나 발, 무릎, 머리 등 신체의 각부분을 이용하여 찌르거나 내리쳐서 제압하는 기술이다.

2)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예로서 손과 발, 그리고 전신을 움직여 상대방을 강타하여 넘어뜨리는 운동을 뜻하는데, 태권도 동작의 묘기는 손, 발, 몸, 전신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는 신체를 강건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도야에 이르게 하며, 기술단련을 통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으로, 인간생활의 육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육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위 본능을 기본으로하여 점차 필요성에 따른 신

12) 이상찬, 유도, 정민사, 1995, p.38.

념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형태의 동작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행동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으로서, 인간의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또한 도덕과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제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신체를 다져주는 정동뇌를 자극, 발달시켜 모든 일을 힘차게 실행하는 의욕을 개발해 준다. 인간은 작업에 임하여 물질의 형태를 변모시키면서 적정수준의 능력을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정신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꿈꾸는 理智는 정신적 개발의 수련이라 할 수 있으나, 육체의 단련 없이는 건전한 생각과 꿈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¹³⁾

이런 의미에서 태권도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하며, 그것은 곧 올바른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투기중의 투기인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강인하고 용기있는 성품으로 변모시켜 매사에 주저 없이 앞장설 수 있는 통솔력을 길러준다. 통솔력과 강한 담력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자신감은 심리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의연함을 낳는다.

따라서 의연한 태도는 인내심을 가져오고 인내는 겸양을 낳게 된다. 또 겸양은 희생적인 정신으로 자아를 극복하게 되고 협동과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 정돈된 사회를 이룩하며, 비굴하지 않은 사회봉사자로서의 뚜렷한 개성을 창조한다. 결국 태권도는 하나의 인간을 다듬어 바르고 참된 인품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태권도는 신체의 국한된 부분만을 이용한 운동이 아니고 지르기, 차기, 치기, 격파, 뛰기와 신속한 몸의 이동을 요하는 등 신체의 전 부위와 각가지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체력의 요소를 고루 배양할 수 있으며 신체의 조정력과 이에 따른 지적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는 신체적 접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격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13) 김정지 (1993). 태권도학 개론. 경운출판사, p. 156.

14) 경찰대학 무도교본, 전게서, p.148.

것을 목표로 수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근육의 활동이 복잡하고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과 행동의 실천을 위한 뇌와 신경의 조화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순환계의 기능의 효과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격시에는 가능한 한 신체의 좁은 부위에 힘을 모아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먹공격시에는 손등의 두 마디 부분과 손날, 손끝, 바탕손, 무릎의 좁은 첨단, 발굽, 발축, 발날 등 가능한 한 좁은 부분으로 공격하고 이와 반대로 방어시에는 팔목, 손바닥 등 비교적 넓은 부분을 사용하여 상대의 충격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구성되어 있다.¹⁵⁾

종전에는 태권도의 모든 품이 발이 좌우 또는 전후로 넓게 벌려 안정성유지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지나친 안정성보다는 신속한 이동이 용이하도록 수정되었다. 즉 양발을 넓게 벌리면 몸의 중심이 낮아져 안정성유지에는 유리하나 차후 동작으로 기민한 전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품의 자세를 높여서 균형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동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한쪽 주먹이 나갈 때 반대쪽 주먹을 동일한 힘으로 당기는 것은 다른 운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힘의 균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며 품세시에도 좌우 동작이 균등하게 구성된 것은 힘의 균형 뿐만 아니라 동작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체의 적응력을 고루 배양하기 위함이다.¹⁶⁾

태권도는 아무리 빠른 동작이라도 힘의 강약과 동작의 신속, 완만을 조정하여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신체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다른 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필요치 않으며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힘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힘의 사용 및 적용에 효과적이다.

3) 합기도

인간의 육신이 근, 골, 기 및 혈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현대의학이 인체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우리 선조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15)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1975, p.25.

16) 육군사관학교, 전게서, pp.15-19.

우리 인체에는 14경락과 365개처의 혈(급소)이 있어 이들의 유기적으로 원활한 활동에 의해서만 건강한 육체를 향유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인간이 사회적 일구성체로서 존재하는 한 건강한 육체는 필연적으로 정신의 강건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합기도는 일반 스포츠와 같이 승부자체에 목표를 설정하여 결과론적인 득실을 따지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전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합기도는 정신적·육체적 수행을 통하여 대자연의 법칙을 체득하고 그 진리의 원천에 잠김으로써 대자연의 섭리와 조화에 접근하여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수련법을 합기법이라 하며 육체의 단련술을 합기술이라 할 때 합기법은 지감-조식-금축 즉 三法을 회통하여 힘-지혜-덕을 얻고자 함이며 합기술은 엔-방-각의 중심원리를 유-엔-화의 자연원리에 대입시켜 앞에서 서술한 14경락과 365개처의 혈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합기도는 스포츠가 아니며, 오직 심신의 수련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합기도는 한 가정의 예법정립으로부터 심신의 건강한 활로를 기하고자 하는 한국정통무예로 보아야 한다.

합기도는 상대의 힘과 힘으로 겨루지 않고 상대가 끌면 그에 따르고, 밀면 그 힘의 흐름에 자신도 순응하면서 항상 무리가 없는 동작을 통하여 자연의 힘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운 춤을 추듯이 상대의 힘을 자신의 동작에 끌어 들이는데 특징이 있다.¹⁷⁾

합기도는 공격 시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인 급소, 맥, 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힘을 모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는 충격적인 것이다. 또한 공격하는 순간에는 특수호흡법을 이용하여 공격의 목표부위를 시간과 거리의 결합으로 타격을 할 때는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에 있어서 해당기술 이외도 급소 등에 호흡법을 통한 집중력과 더불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은 합기도의 뛰어난 특징이며 상대방의 공격을 원형

17) 김의영, 합기도, 도서출판 금광, 1989, p.25.

또는 자신의 힘을 합쳐 상대공격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 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도공격하는 것이다.

합기도의 우수성은 효과적인 방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공격력에도 특징이 있는데 상대방의 작은 부위를 공격할 때에는 큰 부분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반대로 상대의 큰 부위를 공격할 때에는 자신의 작은 부위를 이용하여 공격함으로써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합기도의 술기는 공격기술과 방어기술 및 관절술기와 타신술기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관절술기로는 꺾기, 던지기, 누르기, 조르기 등의 술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신술기로는 차기, 때리기, 치기, 후리기, 찌르기의 술기가 있다. 무기를 사용하는 술기로는 단검술, 장검술, 봉술, 장술, 포박술, 창술, 투석술등이 있으며, 무기사용시의 자세는 서서, 앉아서, 누워서 등의 다양한 술기로 전개된다.

4) 검 도

검도란 검을 통한 도(道)로서 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검술이라 하며 수행과정에서 정신력을 주입시켜, 그 결과 인격·언행이 고상하여지게 하며 몸과 마음이 완전한 인간으로 향해가는 그 특유의 수행을 검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검술은 검도의 체육성을 의미하고, 수행과정이라 함은 검도의 테크닉, 즉 정신적, 육체적, 경기적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정신력은 의도적으로 수련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데, 정신력이 결여된 검도인으로서의 성장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인격이 바로 검도 수행의 목적이며 검도 특유의 인격형성, 즉 도인(道人)이 된다는 것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인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忠·孝·信·勇·仁의 참뜻도 검도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형성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행은 검도인 특유의 무게와 약속이행 및 검도인끼리의 관계유지에 필요한 품위와 언어,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품위있는 언어행동을 뜻하며 언

18) 경찰대학, 무도교본, 대한문화사, 1997, p.85.

19) 김재일 (1990), 검도총서. 서민사. p.138.

행의 고상(高尚)이라 함은 과거의 유교·불교의 전통적인 장점을 현대적인 모랄(MORAL)로 정립된 내용을 의미한다. 완전한 인간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최대한 강건하게 하며 그의 정신적·인격적인 면에서 다섯등급으로 구분된 가치 등급으로 성자·현자·인자·지자·우자로, 여기에서 한 계단 상승을 목적인 완전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바람직한 목표의 실행을 의미한다.

또한 특유의 수행이라 함은 일반 다른 무도, 체육 종목에서 쉽사리 따르지 못하는 특수훈련인 모한(冒寒)·모서(冒暑)의 연무나 도덕적·윤리적인 측면과 국가관·인생관 등의 절대 철학을 지니고 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Ⅲ.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

1.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기본원리

교육계획이란, 조직이나 단체의 효율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기본운영 계획으로서 기획·수행·평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즉, 교육계획은 효과적인 활동장면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계획인 것이다.²¹⁾

따라서 시설·공간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여도 교육계획이 빈약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다. 따라서 경호무도 교육계획은 교육대상자들이 경찰·경호무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이 포함된 내용 구성이라 하겠다.

이것이 경찰·경호무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천적 내용의 총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호활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선 동기와 방법이 포함된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시설, 지도자, 경호현장의 참가자등 경호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을 구성하는 원리에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엄밀한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0) 경찰대학 무도교본, 전게서, p.37.

21) 김귀봉 외, 『사회체육지도론』, 도서출판 대경, 1998. p.145.

첫째, 교육계획은 학습자와 사회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한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그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의하여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관계하에 있으므로, 결국 개인적인 필요도 보장하고 사회적인 요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계획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계획 구성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계획도 각 경호업체의 계열성이나 같은 업체 내에서의 통합성 내지는 같은 대상에 있어서의 교육 주기별 일관성 등의 등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교육계획은 그 자체가 계획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경호원에 대해 소정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계획의 내용은 지속적인 발전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교육계획을 구성할 때에는 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고 그들이 보다 나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계획은 민주적으로 조직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계획을 구성할 때에는 경찰·경호무도 관련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찰간부와 경호관련업체의 주주 및 교육교육생도 교육계획의 구성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즉, 교육계획의 구성을 위해서는 경찰과 경호관련 교육기관과 그와 관련된 다수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구성원칙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 수립의 일반적인 원칙은 교육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밀접한 연관을 지우면서 초보적 기능에서 전문적 기능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이다. 경호무도 교육계획 구성의 대표적인 기본 원리로는 계열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위성식, 1991).

1) 계열성의 원칙

어떠한 학습내용이든지 일정한 위계성을 지니고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와같

은 위계성과 상호 관련성에 따라 경호무도 교육계획의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계열성이라 한다. 먼저 제공하여야 할 내용, 후에 제공하여야 할 내용을 운동기능의 난이도 또는 신체적 발달단계에 따라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에 있어서 동일한 수련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가면서 점차로 숙련, 전문화하여 나가는 것을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이라 하며, 교육계획의 내용을 달리하여 나아가면서 전 계획을 기초로 하여 후속 계획의 실행이 이루어도록 조직하는 것을 계열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나선형 교육계획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동작이나 무도를 도록 할 때의 교육계획의 조직방법이며, 계열성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후 교육계획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으면서 무도기능을 학습하도록 하는 무도교육계획의 조직 방법이다.

경찰·경호무도는 교육생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교육상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나선형 교육계획 원리보다는 계열성의 원리가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다.

2) 통합성의 원리

통합성은 교육계획의 내용이 경찰·경호무도 참가자의 경험 속에서 의미 있게 통합되도록 개발 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호무도 교육계획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육계획의 목적에 모든 경호임무의 내용이 통합되도록 조직하는 일이다.

단편적 신체기능을 나열하고 이를 수련생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계획은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구성에 있어서 특히 삼가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찰과 경호원들을 위한 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구성에 있어서 위기상황 대처방법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련계획의 내용을 선정하고 대처방법이라고 하는 목적에 의미 있게 통합 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3)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이라 함은 동일 수준의 교육계획 내용에 대한 반복적 학습을 뜻한다,

어떤 교육계획의 내용이든 그것이 교육생의 경험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반복학습이 없으면 무도수준 향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도 교육에 흥미를 잃기 쉽다. 동일한 무도의 내용을 얼마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는 무도기술 및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음단계의 교육에 참여를 위한 최소의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교육생이 제공된 교육계획에 대하여 흥미를 잃지 않을 때까지가 적당하다. 따라서 무도교육계획을 운영하는 지도자나 관리자는 교육생의 수준과 흥미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 시 고려사항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경찰과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고유업무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내용은 경호원의 목표가 지시하는 바로 그 내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시 대적기술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각종 우발상황시에 대비할 대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경험이 교육계획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생에 대한 고려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도교육의 내용은 교육생의 흥미와 필요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교육생에 대한 필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호무도 교육계획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 경호원들을 위한 무도 교육방법을 계획 할 경우, 여성들의 경호업무 수행시 당면 문제와 필요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처럼 무도교육계획은 계층별, 성별, 관심분야별로 나누어서 실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합 체계적인 운영도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아무리 좋은 교육계획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을 전개할 시설이나 지도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경호무도 교육계획으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

즉, 이상적 견지에서 개발된 경찰·경호무도교육계획이 현실적으로 전개가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한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도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시설 설비와 교육생의 능력 및 순수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개발된 경호무도 교육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부터 교육계획의 전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확보와 지도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의 일경험다목표(一經驗多目標)달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교육계획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에게 여러 가지의 기능 습득 및 참여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이 한의 목표만을 달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교육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다른 목표달성에도 기여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대학에서 경찰·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무도교육계획은 대학생들이 실제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위기상황시 대처능력 이라는 일차적 목표 이외에도 무도수련을 통한 균형적인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²²⁾

경찰·경호무도 교육계획이 개발되면 이를 조직하여야 하는데, 개발된 무도교육계획을 어떻게 횡적으로 관련시키며, 종적으로 체계를 잡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교육계획은 다시 일일, 주간, 월간, 연간계획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정된 행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교육계획의 연구개발을 정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하고, 이의 합리적인 질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계획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선정 및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선정된 무도교육계획의 전담기구에서는 교육계획의 정선과 구조화, 무도교육의 주기적 개편, 교육방법 개발 장기계획의

22) 위성식, 『사회체육 활동의 구성방법론 上』, 韓國學術資料社, 1991. p.128.

수립, 교육계획의 질적 관리추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무도 교육 계획의 연구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찰·경호무도 지도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향하는가를 정해야만 한다. 지도계획은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경찰·경호무도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경찰·경호무도 교육의 지도단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1단계 (처음단계)

경찰·경호무도의 교육에 있어서 지도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교육의 장(시설, 용구와 집단)을 준비하고, 교육생에게 교육목표와 예측을 갖게하고, 학습에 대한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이다. 즉 경호무도의 교육지도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대해서 지도자의 계획을 교육생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2) 2단계 (중간단계)

경호무도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경호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호실무에 있어서 무도교육 수료 후 실제 경호업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도 기술적인 면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룹활동의 진행방법, 무도에 있어서 행동의 방법이나 운영방법 등 자발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무도교육에 있어서 부수적인 학습을 강조해야만 한다.

무도교육 지도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생이 그룹으로 교육받는 과정이다. 따라서 무도교육은 그룹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 것인가? 또는 조직과 개개의 구성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의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3) 3단계 (정리단계)

무도교육에 단락을 지어서 무도지도의 문제점이나 효과를 정리하여 다음 시간의 무도수업에 이어지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단계가 필요하다. 무도교육계획이 교육생(대상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하는 목적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정리단계는 교육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무도지도의 효과를 기술하거나, 기록하여 확인하는 단계이다.

5. 경찰·경호무도 교육의 평가

일반적으로 무도교육 지도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예비평가, 과정평가, 총괄적 평가 3가지 단계로 행해져야한다.

평가는 교육생을 최고로 적당한 코스 내지 그룹에 배치하여 지도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위 사전에 예비 평가하는 형태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① 계획한 학습 목표달성에 빠질 수 없는 기초적인 기능을 교육생이 몸에 익히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② 교육생을 더욱 고도의 교육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것, ③ 교육생의 성격이나 기능수준 등에 의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사전평가는 참가하려고 하는 무도교육계획의 코스에 관하여 교육생이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등을 명확히 하면 경호무도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정평가는 경호무도 지도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행해지는 과정의 평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도지도의 전개 중에 교육과제에 대해서 교육생이 어느 정도의 습득을 하고 있는가, 또 습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를 확인하여, 즉시로 필요한 학습의 조정이나 지도의 미흡한 곳을 고치는 것이다.

과정의 평가는 특히 호신술 등과 같이 학습의 기술내용이 단계적, 순차성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효력은 크다고 한다. 또 교육생에게 된 것과 더욱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서 교육 중 실수원인 등을 확인시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단적 효과도 놓치지 않는다. 지도자에 있어 과정의 평가효용은 대다수의 교육생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 내용이나 지도법의 대폭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총괄적 평가는 무도교육의 코스가 전부 종료한 시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후조사라고도 한다.

총괄적 평가의 목적은 교육생의 학습활동, 지도방법 또는 교육계획의 코스편성 등의 개선에 있다. 총괄적 평가에 있어서는 기능의 평가뿐 아닌, 신체발달의 평가나 그룹노트에 의한 그룹활동의 평가 등의 자료와 연결하여 경호무도 지도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

IV.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실태

1. 경찰·경호관련 학계 무도교육 실태

1) 경호관련 학계 무도교육 실태

현재 2003년도 교육부에 등록된 경호관련학과는 4년제 19개, 2년제 28개, 사회교육원 6개 총 53개 교육기관이 설립²⁴⁾되어 있는 가운데, 4년제 대학의 무도교육은 보통 4년 동안에 7일 기준으로 3-4시간, 체력훈련 및 심신단련, 체포술·호신술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여러 가지의 무도 중에서 본인의 체력이나 체형에 맞는 무도(1-2가지 종목)과목을 선택하여 무도교육을 받고 있다.²⁵⁾

전문대학의 경우 7일 기준으로 2-4시간을 경호무도로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대부분 무도(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종류에 대한 선택의 폭이 거의 없고 학교자체 내에서 1가지 종목만을 지정하여 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⁶⁾

아래 <표 4-1>은 4년제 5개 경호 관련학과 전체교과목 중에서 무도교과목 비중에 관한 총괄현황이다. 용인대학교 경호학과는 전체 36과목 중 무도관련 교과

23) 김상홍, 『사회체육지도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대경북스, 1999. p.39.

24) <http://www.securityjob114.co.kr>

25) www.hanseu.ac.kr, www.joongbo.ac.kr, www.knupe.ac.kr, www.kyonggi.ac.kr, www.yongn.ac.kr

26) www.hanseu.ac.kr, www.jsc.ac.kr, www.kbc.ac.kr, www.sunghwa.ac.kr, www.tk.ac.kr

목이 13개 과목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서대 경호비서학과는 총67개 과목 중 16개 과목으로 24%, 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 전공은 총37개 과목 중 5개 과목으로 13%, 경기대 경호안전학 전공은 총 33개 과목 중 8개 과목으로 24%, 초당대학교 경호비서학과는 총 41개 과목 중 11개 과목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인대, 한서대, 중부대, 경기대, 초당대 등 5개 대학의 경호 관련학과에서 무술 관련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에 평균 약 25%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호 관련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입학 전에 이미 태권도, 유도, 용무도, 검도 등의 무도 유단자이다. 이들이 입학 후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대부분 2-3개 종목의 무술에 7-8단 이상의 유단자가 된다. 경호 관련학과 졸업자를 선호하는 사회적 수요 경향이 용모와 무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경호학이 체육계열에 속해 있고, 대부분 교수진들이 무도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각 대학의 교과과정(Curriculum)중 무도관련 교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경호 관련학과 무도관련 교과목 총괄 현황²⁷⁾

| 구 분 | 무도관련 교과목 | 백분율 |
|-------------------|--------------------------------------|------------|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무도론, 경호무도1-8, 호신술1-4 | 13개 과목 37% |
| 한서대학교 비서경호학과 | 태권도1-4, 유도1-4, 검도1-4, 경호무도1-4 | 16개 과목 24% |
| 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과전공 | 무도학개론, 기초무술, 경호무술, 연행체포술, 경호무도 | 5개 과목 13% |

27) 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과, “정보사회에 있어서 안전경호산업의 대응전략”, 제5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2, pp. 191-194.

| | | |
|-----------------|--|------------|
| 경기대 경호안전학 전공 | 경호무도초급1-2, 경호무도중급1-2, 체포호신술1-2, 경호무도종합1-2 | 8개 과목 26% |
| 초당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무도론, 태권도1-2, 유도1-2, 검도1-2, 경호무도1-2, 호신1-2 | 11개 과목 27% |

2) 경찰 관련학계 무도교육 실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규 대학과정에 25여 개 이상의 경찰 관련학과(예, 경찰행정학과, 여자경찰학과 등)가 개설되어 체포술을 포함한 무도교육의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지만 무도/체포술 교과목을 1학기씩 이수하는 정도이어서 전반적으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과목인 무도교육의 비중은 미흡한 실정이다.

<표 4-2> 전국 대학 경찰관련학과 무도교육 Curriculum 현황²⁸⁾

| 학년학기 \ 학교명 | 1 | | 2 | | 3 | | 4 | |
|---------------|----|-----|-----|------|------|-----|-----|---|
| | 1 | 2 | 1 | 2 | 1 | 2 | 1 | 2 |
| 경기대학교 | | | | | | | 체포술 | |
| 경남대학교 | | | 무술 | | | | | |
| 경운대학교 | | | | 무술학1 | | | | |
| 계명대학교 | | | | | 무술 | | 체포술 | |
| 관동대학교 | 무술 | 체포술 | | | | | | |
| 광주대학교 | | | 무술1 | 체포술1 | 체포술2 | | | |
| 대경대학교 | | | | | | | | |
| 대구대학교 | | | | 무술1 | 무술2 | 체포술 | | |

28) 김의환(2002), “전국 대학 경찰 관련학과 무도교육의 활성화 방안[1]”, 한국경찰학회세미나 논문집, pp. 6-7.

| | | | | | | | | | |
|-------------------|----------------------------|-----|-----|------|-----|-------|--|--|--|
| 대불대학교 | 여 자 | | 무술1 | 무술2 | | | | | |
| | 일 반 | | 무술1 | 무술2 | | | | | |
| 동국대학교 | | | | 무술 | 체포술 | | | | |
| 동의대학교 | | | | 무술 | 체포술 | | | | |
| 용인대학교 | | 무도 | 체포술 | | | | | | |
| 우석대학교 | | | | 체포술 | | | | | |
| 원광대학교 | | | | | | | | | |
| 전주대학교 | | | | 경찰무술 | | 경찰체포술 | | | |
| 증부대학교 | | | | 무술1 | 무술2 | | | | |
| 천안대학교 | | | | 무도1 | | 체포술 | | | |
| 초당대학교 | 무술, 체포술(학년, 학기 구분이 안 되었음) | | | | | | | | |
| 한남대학교 (여성경찰학과) | 무도1, 무도2(학년, 학기 구분이 안 되었음) | | | | | | | | |
| 한세대학교 | | 무도1 | 무도2 | 체포술 | | | | | |

아래 <표 4-2>와 같이 경찰 관련학과 경기대의 18개 대학의 교과과정(Curriculum)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무도관련 교육은 무도와 체포술 2개 과목 위주의 Curriculum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도 관련과목이 4년(8학기)동안 1개 과목인 대학은 경기대, 경남대, 경운대, 우석대 등 4개 대학으로 22.2%를 나타내 보였으며, 무도[1]와 체포술의 2개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72.2%로 13개 대학이 해당된다. 한편 무도[1],[2]의 2학기과 체포술 1학기를 실시하는 대학은 대구대, 우석대, 한세대등 3개 대학이 있다.

경찰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호신술과 관련하여 언급한다면 체력에 대한 준비, 무도의 준비, 체포술의 준비가 충실해야 한다. 즉, 맨손기술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입장에서 무도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준비국면과 실제국면에서의 교육내용이 필히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경찰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전국 정규 대학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경찰행정학과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무도교육의 강화에 관련되는 체력육성과목이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경찰로서 2-3단 정도의

유단자가 될 수 있는 무도교육의 보강과 병행하여 체포술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실태

1) 경찰직 종사자 무도교육 실태

경찰직 종사자들에게 무도교육과 체포술기는 범인을 제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경찰직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술과교육 중에 '무도'과목이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 과목으로 변경하여 획일적인 집합교육대신 부서별 직무교육과 각종동호회 및 연구모임 활동을 직장훈련의 범주에 포함시켜 직장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면서²⁹⁾ 무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찰직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여 무도교육의 재인식과 필요성을 재고하였다.

(1)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 전

① 술과 배점(무도, 사격술)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전 술과교육은 사격술과 무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격술은 배점총점은 4점이며 정기평가전에 사격능력을 검정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년 2회 사격을 실시하며 총 득점수에 의하여 배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도교육은 정기적으로 년 2회 무도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무도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총점은 4점이며 참석자와 불참자에 대한 가점 및 감점제를 실시하였다. 무도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하고 훈련참석자와 불참자에게는 가점과 감점제를 실시하였으며, 무도훈련 1회 불참시 0.1점을 감점하고 훈련 2회 참석시마다 0.1점씩 가산하되 총점 4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³⁰⁾ 이처럼, 무도교육은 사격처럼 경찰공무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9) 경찰청 훈령 제 363호(2001. 8. 14).

30) 일반경무 제1장,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평가기준, p. 174.

<표 4-3> 무도 배점기준³¹⁾

| 구분 | 등급 | 8급 | 7급 | 6급 | 5급 | 4급 | 3급 | 2급 | 1급 | 초단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배점 | 점 | 2.5 | 2.6 | 2.7 | 2.9 | 3.0 | 3.0 | 3.1 | 3.2 | 3.5 | 3.8 | 4.0 | | | |
| 가점 및 감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2회 참석시마다 0.1점 가점 · 훈련 1회 불참시마다 0.1점 감점 (월 1회 기준으로 가점, 감점 실시) | | | | | | | | | | | | | | |

(2)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 후

경찰관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직장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 직장훈련 규칙을 개정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육은 체포술을 포함한 무도교육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는 ‘무도평가’를 ‘체력훈련평가’ 항목으로 국한시킴에³²⁾ 따라 경찰관들의 무도수련 기회와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학과와 술과”를 “직장교육·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장교육·체력단련 및 사격훈련 평가는 아래 <표 4-4>로 명시하였으며, 개정전·후 무도교육 비교는 <표 4-5>, 현행 직급별 교육시간은 <표 4-6>으로 명시하였다.³³⁾

<표 4-5>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평가기준³⁴⁾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사격훈련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기 : 3점 · 후반기 : 3점 · 권총마스터로 지정된 자:6.0점 · 연 2회(전·후반기)사격훈련시 기록 사격의 득점만을 평가 (전반기속사+완사/100)+ (후반기속사+완사/100) |

31) 일반경무 제1장,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무도 배점기준, p.174.

32) 경찰청 훈령(2001), 제 14조, 제1항, 제1호.

33) 경찰청 훈령(2001) 제12조, 2호.

34) 경찰청 훈령 제363호(2001), 별표1,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평가기준.

| | | | |
|----------|----------------|--|--|
| 체력 단련 | 5 | 5점 × $\frac{\text{체력단련동호회참석월수}}{12\text{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단련동호회에 월2회 이상 참석시 당월 참석으로 인정한다. · 무도훈련 월2회 이상 참석자는 체력단련과 관계없이 당월 참석으로 인정한다. |
| 직장 교육 | 10점 ~ 4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경감 10점 × $\frac{\text{참석회수}}{12\text{개월}}$ · 경위이하 4점 × $\frac{\text{참석회수}}{12\text{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교육 불참자가 당월에 정서함양동호회 또는 연구모임을 2회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당월의 직장교육 참석으로 간주한다. |

- ※ 교육, 파견,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의 평정은 전회의 성적으로 같음한다.
 - 월별로 실시하는 직장교육 및 체력단련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래는 무도교육에 대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전·후 대비 표이다.³⁵⁾

<표 4-5> 경찰공무원 직장훈련(무도교육) 시행규칙 개정전과 개정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 제9조(직장훈련시간) 술과훈련 중 무도훈련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사격훈련은 연2회 이상으로 하되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 제9조(직장훈련 시간) 체력단련동호회 활동은 월 2회 이상으로 하며 사격훈련중 정례사격은 연 2회 이상, 외근요원 특별사격은 연 6회이상으로 하되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

35) 경찰청 훈령 제363호(2001),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 |
|---|--|
| <p>제12조(평가방법) 술과평가는 사격훈련과 무도훈련 평가에 의하여 실시한다.</p> <p>제14조(평가의 기준 등) 1. 경정, 경감 가. 무도평가 5점 나. 교양참석 10점</p> <p>2. 경위이하 가. 사격평가 6점 나. 무도평가 5점 다. 교양참석 4점</p> | <p>제12조(평가방법) 체력단련은 체력단련동호회(무도훈련 포함) 2회 이상 참석여부로 평가하고 사격훈련은 경위이하 경찰관에 한하여 상·하반기 정례사격 성적으로 평가한다.</p> <p>제14조(평가의 기준 등) 1. 경정, 경감 가. 체력훈련평가 5점 나. 직장교육평가 10점</p> <p>2. 경위이하 가. 사격훈련평가 6점 나. 체력단련평가 5점 다. 직장교육평가 4점</p> |
|---|--|

<표 4-6> 경찰직 종사자 직급별 직장 체력훈련교육 시간

| 분야 | 과목 | 일반 순경 | 여자 순경 | 101 경비단 | 사이버수사 | 신임 미이수(특채) |
|------|------|----------|----------|------------|-------|---------------|
| | | 시 간 | | | | |
| 체력훈련 | 무도 | 105 | 110 | 67 | 105 | 40 |
| | 체육 | 14 | 14 | 14 | 14 | 14 |
| | 산악훈련 | 13 | 13 | 13 | 13 | 10 |
| | 제식훈련 | 32 | 32 | 32 | 32 | 16 |

(3) 경찰직 종사자 무도교육 시설 현황

전국의 경찰무도교육의 시설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국 248개 관서 중 무도교육시설을 확보한 곳은 162개소(64.8%)였으며, 무도교육시설을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88개소(35.2%)로 나타났다.

각 경찰소속별 현황을 보면 각 지방청에 1개씩 15개, 각 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경찰서에 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과 제주가 각각 3개, 2개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 전국경찰서에 230개의 무도교육시설이 비치되어 있으나 그다지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경찰무도교육 시설 현황

| 구 분 | | 계 | 확 보 | | 미 확 보 | |
|-----|-----|-----|--------|-------|-------|-----|
| | | | 무도훈련전용 | 타용도겸용 | 타용도전용 | 미확보 |
| | | 248 | 121 | 41 | 10 | 78 |
| 지방청 | 소 계 | 15 | 10 | 2 | | 3 |
| | 경찰청 | 1 | 1 | | | |
| | 서 울 | 1 | 1 | | | |
| | 부 산 | 1 | 1 | | | |
| | 대 구 | 1 | 1 | | | |
| | 인 천 | 1 | 1 | | | |
| | 울 산 | 1 | | | | 1 |
| | 경 기 | 1 | 1 | | | |
| | 강 원 | 1 | | | | 1 |
| | 충 북 | 1 | 1 | | | 1 |
| | 충 남 | 1 | 1 | | | |
| | 전 북 | 1 | 1 | | | |
| | 전 남 | 1 | 1 | | | |
| | 경 북 | 1 | 1 | | | |
| | 경 남 | 1 | | 1 | | |
| | 제 주 | 1 | | 1 | | |
| 소 계 | | 230 | 106 | 39 | 10 | 75 |
| 서 울 | | 31 | 20 | 6 | 1 | 4 |
| 부 산 | | 14 | 9 | 3 | 1 | 1 |
| 대 구 | | 8 | 3 | | | 5 |
| 인 천 | | 8 | 4 | 4 | | |

| | | | | | | |
|-----|------|-----|----|---|---|----|
| 경찰서 | 울 산 | 3 | | 3 | | |
| | 경 기 | 31 | 11 | 7 | 2 | 11 |
| | 강 원 | 17 | 9 | | | 8 |
| | 충 북 | 11 | 7 | 2 | | 2 |
| | 충 남 | 20 | 9 | 3 | | 8 |
| | 전 북 | 15 | 1 | 6 | | 8 |
| | 전 남 | 26 | 17 | | 2 | 7 |
| | 경 북 | 24 | 12 | | | 12 |
| | 경 남 | 22 | 4 | 5 | 4 | 9 |
| | 제 주 | 2 | 2 | | | |
| | 교육기관 | 소 계 | 3 | 3 | | |
| 경 대 | | 1 | 1 | | | |
| 종 합 | | 1 | 1 | | | |
| 중 앙 | | 1 | 1 | | | |

2) 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실태

경호는 정치인, 연예인 등 특정 유명인의 신체적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호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보디가드(Body Guard)를 의미한다. 최근 사회의 다원화·복잡화에 따른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겸비한 전문경호요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각 경호관련 교육생 대부분이 졸업 또는 수료 후 경호업계의 종사자로 투입될 것이며, 각종 위해자의 돌발적인 상황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현실에 대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경호·경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인력채용의 선발기준에서 무도실력을 평가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실제상황에 있어서 범인의 제압 또는 대적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민간경호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단일법규나 관리규정이 없으므로 민간 경비업체 관련법인 경비업법을 살펴보면,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신입 경비원에 대하여 임용전에 68시간의 신입교육과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월 4시간 보

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경비업무의 공공적 성격상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경비업자의 지도·감독하에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하게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호업계의 많은 발전과 경호관련업체의 양적 증대로 인해 그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호·경비관련업체 사업자에 의한 종사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은 통상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인력부족과 시간, 비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선발과정에서 취업동기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업체의 종사자의 61.7%가 ‘실업중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었으며, 응답자의 11.8%는 ‘부업으로 필요해서’ 취업하게 되었다고 취업동기를 밝히고 있어 그 임무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박병국, 1996).

경호업무에서 무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공격적인 무술 즉, 치고 차고 부수는 파괴적인 무도가 아닌 위해기도자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즉,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주위의 다른 사물 및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³⁶⁾ 경호무도는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무도와 비슷하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경호무도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있다. 경비인력에 있어서 시설경비업무는 20인이상, 기계경비업무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인이상, 그리고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는 무술유단자 5인 이상이 있어야한다.³⁷⁾ 이처럼, 신변과 재산에 관여된 업무에 관해서는 무술유단자를 경호업종에 5인이상 종사하도록 할 만큼 경호직 종사자에 대한 무도교육은 중요하다.

36) <http://www.worldbhg.co.kr>

3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표 4-8>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³⁸⁾

| 구 분 | 과 목 | 시 간 |
|------|--|-----|
| 학과교육 |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2 |
|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2 |
| 실무교육 | · 시설방호 | 2 |
| | · 불심검문 | 2 |
| | · 소 방 | 2 |
| 무술교육 | · 기본훈련 및 호신술 | 2 |
| 기 타 | ·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 | 3 |
| 계 | | 15 |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무도관련 교육은 일반경비원(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2시간과 특수경비원(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8시간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4-9>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³⁹⁾

| 구 분 | 과 목 | 시 간 |
|------|--|-----|
| 정신교육 | · 정신교육 | |
| 학과교육 |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4 |
|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8 |
| | · 민간경비론 | 2 |
| 실무교육 | · 기계경비실무 | 4 |
| |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을 포함한다) | 4 |
| | · 시설경비(야간경비를 포함한다) | 6 |
| | · 소 방 | 4 |
| | · 정보보호 | 2 |
| | · 보안업무 | 4 |

38)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관련

39)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관련

| | | |
|------|---------------------|----|
| | · 민 방 공(화생방을 포함한다). | 6 |
| | · 총기조작 | 2 |
| | · 총검술 | 4 |
| | · 사 격 | 12 |
| | · 예 절 | 2 |
| 무술교육 | · 체포술 및 호신술 | 8 |
| 기 타 | ·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 | 4 |
| 계 | | 80 |

올해 6월 말까지 한국경호경비협회에 등록된 경호경비업체는 분야별로 시설 경비-1천9백33개, 무인경비- 1백43개, 호송-53개, 경비-1백73개에 이른다.⁴⁰⁾

현재 실질적으로 경호업무에 투입시키고 있는 사설경호원 양성학원(Academy) 및 업체에서는 경호원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12주 동안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 주말 반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곳까지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⁴¹⁾

각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교육생 대부분이 수료 후 사회의 최일선에서 근무해야 함은 물론 실무 실전경험이 적어 경호상황시 위해기도자의 피격 또는 범죄의 행위에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경호대상자 또는 자신의 생명 보호는 물론 범인대적에 기초적인 무도기술 및 체포술 실력을 습득하여 강력범과의 대적 상황시 칼, 병, 각목 등 각종 흉기를 가지고 공격한 다면 자신의 방어는 물론 범인과 대적 할 것인지 의문 속에 있는 것이 경호무도훈련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 효율적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 역할 연기 및 범인제압방법의 모의상황의 무도교육 프로그램이 연구제작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도교육이 위해기도자와의 대적 능력과 경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호교육기관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강력한 무도실력을 겸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기관의 교수 및 경호·경비업체의 경호무도 지도자들에 의한 교육훈련 프로

40) 중앙일보 2002-10-20.

41) www.bodyguard.or.kr, www.bodyguard.or.kr, www.zeusguard.com.

그램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무도시간 배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양한 경호·경비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잘 통제된 유능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경호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것이야말로 전문화를 향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추구에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준들과 선발 채용기준이 요구되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요구하는 법과 규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호무도교육은 경호원의 기본직무능력이며 단순한 체력단련에 그치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범죄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합당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각 경호·경비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인력채용시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무도단증 우대로 인한 서류전형으로 그치며, 무도능력에 대한 시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권의 전문대학에서는 실시하는 경호관련학과의 신입학 전형에는 경호원 으로서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뿐만아니라 면접조차 실시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경호원의 무도훈련은 위해자의 범죄대응능력에 대한 제고와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각 경호·경비 관련업체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움 등을 무도교육훈련의 기피현상의 그 첫째로 들 수 있고, 둘째는 평소 체력운동 부족, 셋째는 불안, 공포, 긴장, 폭음, 폭식과 영양부족, 넷째로는 업무로 인한 흡연의 지나친 탐닉 등으로 분석되며 특히 위 상황들은 강한 활동력과 강한 근육력의 피로한 상태에서 견뎌오면서 오게 되는 피로로 무도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도훈련방법의 변화성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실질적인 무도교육 훈련은 기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2) 최기호,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45.

그리고 경호무도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자신의 신체건강과 위해기도자의 제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의 경호·경비 관련업체에서는 무도교육훈련의 시설과 여건의 열악성으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무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일부는 강당을 무도훈련장과 겸용으로 사용하거나 정신교육만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업체의 근거리에 있는 사설체육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의 여러 개의 체육관을 모두 이용하기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1가지를 선택하여 무도수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V.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발전방안

현대사회는 범죄의 흉폭화·다양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경찰의 인력과 예산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경호사업이 발전되고 있다.

민간경호는 경호분야와 경비분야로 구별되고 있는데, 경비분야는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위해를 근접해서 방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도수련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비업무 종사자들은 연령의 고령화·비전문가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유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경찰과 경호직 종사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위적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무도 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치안 업무를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채용방법에서 이론주의의 시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각종 매스컴에서 경찰공무원이 범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총기를 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경찰·경호직 종사자는 근본적으로 범죄대응과 범인체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부터 무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경호직 종사자의 활동에 있어 임무에 충실하게 되면 자칫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 행한 무력행위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경호무도는 위해기도자에 의한 위기상황을 막고 그 상황에 적절한 무도기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경호원 직무능력이며 심신의 수양과 건전한 정신력 배양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방어(Cover) 및 보호개념이며 체력증진과 위해기도자 제압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무도이다.

즉, 무도를 단순한 경찰·경호임무 수행 시 범인대적과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수행 시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는 철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과 경호임무에 따른 위험성과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무도교육훈련이 요구되며 강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무도수련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하며 무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적인 보급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앞서 경찰과 경호교육기관 및 경찰·경호직 종사자들이 실시하는 무도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경호교육기관 및 경호·경비관련업체의 무도교육시간은 현재 치안상황에 대응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의 부족

둘째, 경찰·경호관련직 관리자요원들의 무도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결여

셋째, 경찰 및 경호원 선발 및 채용시 무도성적 반영비율의 부적절

넷째, 현직 경호·경비 관련 종사자들이 무도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욕의 저하

다섯째, 무도교육훈련장의 시설과 여건의 열악성

여섯째, 무도교육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제의 결여

일곱째, 업무의 과다로 인한 무도수련시간의 결여

여덟째, 관련관리자의 교육훈련비용 절감의식 팽배 등을 배경으로 하여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교육 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무도교육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도교육시 일반무도가 아닌 경찰·경호직 종사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한 무도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련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와 관리자의 무도수련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경호관련 학계의 교과과정 운영시 무도 및 체력단련 과목 비율상승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경찰·경호직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시 무도교육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경호 교육기관의 전담 무도교관의 의무적 배치로 인한 관련 업무와 연계된 연구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찰·경호직 종사자 채용시 무도능력 우수자 우대방침 수립으로 인한 무도교육 활성화 및 동기부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무도경찰 특별채용제도의 지속적 시행 및 공개채용시 무도에 대한 점수반영 비율을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경찰 관련학과의 무도능력향상과 현장 적응능력 고취를 위한 무도전공 전임교수의 채용 유도로 인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각종 범인체포에 대한 사례모집 및 체포방법의 구체적 제시로 인한 경찰직종사자의 무도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켜야 한다.

아홉째, 경호·경비직 종사자들을 경찰 교육기관(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등)에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연계적 업무협조와 체계적 무도수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열 번째, 경찰·경호 관련학과 무도능력향상과 현장적응능력 고취를 위한 무도전공 전임교수 채용 유도로 지속적인 수련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한 번째,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 수련의 환경과 여건조성을 위해 교육시

설설비기준의 제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일반 경찰·경비관련업체에서 선발 및 채용되는 자격에 있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 사회에 있는 사설 체육관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무도와 관련된 운동을 접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군복무 시 누구를 막론하고 태권도 초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찰·경호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도수준은 긴급상황 시 위해자의 제압능력을 위한 체포술·호신술과 무도훈련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선발 및 채용된 후에도 각 경찰·경호직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현대사회는 강력 범죄의 증가와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도실력과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경호원은 위기상황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업무와 연계된 체계적이고 특수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경호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사회의 최 일선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무도교육훈련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해야 하며 고유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기초는 교육훈련의 내실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경호무도 교육훈련 실태와 문제점을 근거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찰·경호무도교육이 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무도교육 시 일반무도가 아닌 경찰·경호직 종사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한 무도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련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와 관리자의 무도수련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경호관련 학계의 교과과정 운영 시 무도 및 체력단련 과목 비율 상승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경찰·경호직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시 무도교육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찰·경호 교육기관의 전담 무도교관의 의무적 배치로 인한 관련 업무와 연계된 연구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 관련학과의 무도능력향상과 현장 적응능력 고취를 위한 무도전공 전임교수의 채용 유도로 인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호·경비직 종사자들을 경찰 교육기관(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등)에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연계적 업무협조와 체계적 무도수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가 요구되며, 무도경찰 특별채용제도의 지속적 시행 및 공개채용시 무도에 대한 점수반영 비율을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경호직 종사자 무도 수련의 환경과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설비기준의 재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찰·경호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호무도 교육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경찰·경호직의 무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무도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여섯째, 경찰·경호직 인력을 관장하는 전문 기관이 설립되어 경찰과 경호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력을 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찰·경호직의 인원선발 및 채용에 있어서 무도 실기시험을 의무화와, 채용 후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경호무도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일곱째, 경찰·경호직 현장의 단계적 인력보충으로 실무자들의 과다업무를 줄이고 무도수련을 통한 자기개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경호무도 경연대회 및 우수자 특진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덟째, 경찰·경호직의 무도수련장 시설구축 의무화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무도지도자 업무의 분리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지도자의 질적 향상과 함께 경찰·경호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경호무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한 처치능력을 개발하고 더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4.
- 경찰대학, 『무도교본』, 대한문화사, 1997.
- 경찰종합학교, 『비경찰·경호경비·통신경찰·전술학 (경찰교과서4)』, 경찰종합학교, 1987.
- 고영완 외, 『트레이닝 방법론』, 도서출판 태근, 1998.
- 김귀봉 외, 『사회체육지도론』, 도서출판 대경, 1998.
-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6.
- 김상홍, 『사회체육지도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대경북스, 1999.
- 김석련, 『태권도교본』, 오성출판사, 1993.
- 김영학, 『전공검도』, 생능출판사, 1997.
- 김의영, 『합기도』, 도서출판 금광, 1989.
- 나현성, 『한국학교 체육지도사』, 도서출판 교육원, 1985.
- 대한용무도협회, 『용무도』, 도서출판홍경, 2001.
- 명광식, 『합기도특수호신술』, 서림문화사, 1994.
- 박준석, 『경호무도의 이론과 실제』, 오성출판사, 1999.
-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제2권)』, 1994.
- 오정주, 『경찰체포 호신술 교본』, 도서출판인동, 1999.
- 용인대학교, 『무예지수』, 태권도학과편집부, 1995.
- 육군사관학교, 『무도교본』, 육군사관학교 출판부, 1996.
- 이상찬, 『유도』, 정민사, 1985.
- 이상철, 『경호운용론』, 도서출판 홍경, 1997.
- 이상철, 『경호방법론』, 도서출판홍경, 1998.

- 이상철, 『경호실무론』, 도서출판홍경, 2000.
- 이성진, 『유도』, 교학연구사, 1998.
- 이종립, 『검도』, 한국문원, 1996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6.
- 위성식, 『사회체육 활동의 구성방법론 上』, 韓國學術資料社, 1991.

2) 논 문

- 구자광,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호안전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양재열, 『경호의 기본적인론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염상국,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이상철,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8집1호, 1997.
- 이상철 외, 『용인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98.
- 이상철 외, 『경찰공무원 무도수련참가와 업무수행과의 관계』, Korea Sport Research, 2000.
- 진성우, 『한국합기도의 호신술 수련방법에 관한 내용분석』, 공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기호,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1998.
- 최평길, 『국가원수 경호관리 개선방안』,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988.
- 한이석 외, 『실존주위 무도에 관한고찰』, 무도인격소지 제4집 제1호,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1992.

2. 외국문헌

BurtRapp & TonyLesce, 『BODY GUARDING』, Breakout productions, 1995.

Philip Melanson, 『The plitics of protection』, 1988.

U.S.CID, 『Protective Service』, 1978.